

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(제55조 관련)

1. 제52조, 제56조 및 제91조의19제2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 다만,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경우 그 산정한 금액이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.

연령	지급액
61세	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$\times$ 66/70
62세	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$\times$ 62/70
63세	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$\times$ 58/70
64세	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$\times$ 54/70
65세 이후	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$\times$ 50/70

2. 제54조제1항 본문, 제54조제2항 및 제91조의19제1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연령	지급액
61세	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$\times$ 86/90
62세	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$\times$ 82/90
63세	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$\times$ 78/90
64세	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$\times$ 74/90
65세 이후	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$\times$ 70/90

3.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연령	지급액
61세	최저 보상기준 금액 $\times$ 80/100 $\times$ 86/90
62세	최저 보상기준 금액 $\times$ 80/100 $\times$ 82/90
63세	최저 보상기준 금액 $\times$ 80/100 $\times$ 78/90
64세	최저 보상기준 금액 $\times$ 80/100 $\times$ 74/90
65세 이후	최저 보상기준 금액 $\times$ 80/100 $\times$ 70/90